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가 및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 : 600명 ⇒ 618명(증18)

나. 기관별 정원 조정

○ 집행기관 정원 : 589명 ⇒ 607명(증18)

- 본 청 : 293명 ⇒ 300명(증7)
- 직속기관 : 90명 ⇒ 96명(증6)
- 사 업 소 : 46명 ⇒ 43명(감3)
- 읍 · 면 : 160명 ⇒ 168명(증8)

○ 의회사무기구 정원 : 11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반영

다. 입법예고 : 5일

라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
마.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0명이며”를 “618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89명”을 “607명”으로 한다.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3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618	300	11	96	43	168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86	295	11	69	43	168
4급	1	1				
4~5급	4	2		1		1
5급	28	13	3		3	9
6급 상당이하 소계	549	279	8	67	37	158
전문경력관 소계	4			1	3	
별정직 계	1	1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5	3		2		
연 구 관						
연 구 사	5	3		2		
지도직 계	25			25		
지 도 관	3			3		
지 도 사	22			22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0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 2. (생 략)	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618명이며----------. 1. ---------- 607명 2. (현행과 같음)

[별표3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600	293	11	90	46	160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68	288	11	63	46	160
4급	1	1				
4~5급	3	1		1		1
5급	28	13	3		3	9
6급 상당이하 소계	532	273	8	61	40	150
전문경력관 소계	4			1	3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소계	1	1				
연구직 계	5	3		2		
연 구 관						
연 구 사	5	3		2		
지도직 계	25			25		
지 도 관	3			3		
지 도 사	22			22		

[별표3]
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618	300	11	96	43	168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86	295	11	69	43	168
4급	1	1				
4~5급	4	2		1		1
5급	28	13	3		3	9
6급 상당이하 소계	549	279	8	67	37	158
전문경력관 소계	4			1	3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 이하소계	1	1				
연구직 계	5	3		2		
연 구 관						
연 구 사	5	3		2		
지도직 계	25			25		
지 도 관	3			3		
지 도 사	22			22		